

베트남의 우편 및 전기통신에 관한 법률안

동향정보실

베트남의 우편·전기통신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은 베트남 우전공사(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VNPT), 베트남 우전청(Department General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DGPT) 및 관계성청에서 검토중이며 1997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통신주권과 외자의 도입, 인터넷에 관한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베트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 중 전기통신에 관한 법률만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출처: 國際通信經濟研究所, 『ベトナムの電気通信事情』, 1997. 10, pp.61-82.)

제1장 총 칙

제1조

- (1) 우편 및 전기통신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경제 및 통신수단인 인프라스트럭처로서 경제-기술적 산업이다.
- (2) 공중용의 우편·전기통신 네트워크는 국가의 통신수단으로서 지켜져야 되며 또한 누구라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

우편 및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기관, 경제단체, 군대 및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각 급 인민위원회(시청, 동사무소)는 각각의 장소에서 기술설비, 운용통신을 지키기 위한 조직체제에 책임을 가진다.

제2조 이 법규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전체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우편·전기통신네트워크를 시급히 확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우편과 전기통신에 관련된 것을 규제한다.

우편, 전기통신에 관한 베트남의 조직, 개인, 외국의 조직, 외국인 모두가 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

국무성, 내무성에 의한 특별한 우편 및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형성 및 운용, 또한 그것들의 상호관계는 정부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 (1) 우편과 전기통신의 비밀과 안전성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으로 보증된다.
- (2) 다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a. 우편·전기통신 네트워크의 운용 방해 및 그것의 특별 목적 이용
 - b. 베트남에 대한 대항목적을 위해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 국가의 안전·질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설비, 미풍양속을 침해하거나, 밀수행위, 기타 위법행위
 - c. 우편, 소포, 팩스의 내용물을 절도, 파괴, 열람, 교환하거나 공개하는 것
 - d. 전기통신의 신호를 도청하거나 위법으로 녹음하는 것
 - e. 우편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 그러나 본인의 양해가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다.
- (3) 우편·전기통신의 관리·운영, 우편·소포·팩스의 관리, 감시, 보류는 법률에 적합한 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4) DGPT는 내무성과 그 밖의 관련 성청과 협력하여 우편·전기통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국가의 안전, 사회 질서·통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 4 조 베트남의 조직, 개인·외국의 조직, 외국인은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허가된다. 모든 조직 및 개인은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시는 법률에 따르는 것이 의무화된다. 어떠한 것도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법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가령 이용자가 우편·전기통신 법령을 어기는 경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 5조 정부는 우편·전기통신의 통일적이며 국가적인 관리를 실행한다. DGPT는 정부의 규칙에 따라 국가 전체의 우편·전기통신 및 무선주파수의 국가관리를 운영하는 국가 기관이다.

성, 성급의 관청, 각 급 인민위원회는 각각의 기능, 직무 능력 및 권력에 따라 DGPT와 협력하여 우편·전기통신의 국가에 의한 관리를 실행한다.

제 6조 정부는 우편·전기통신의 정가, 요금, 수수료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DGPT 장관은 정부 규칙에 따라 정가, 요금을 공시한다.

제 7조 DGPT 장관은 우편·전기통신서비스의 국내 및 국제에서의 개시·폐지를 결정하고 공시한다. 이것에는 시험 서비스의 개폐 및 우편·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터 통신도 들어간다.

또한 대외 송금이나 세관을 위한 우체국의 개폐 및 해안 또는 특수목적의 우체국 개폐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고 주지한다.

제 3장 전기통신

제 1절 공중 전기통신 네트워크

제 36조 공중 전기통신 네트워크는 국내 전기통신 핵심 시스템(교환 시스템, 지역간, 국제전송 시스템)지역 내 및 시내 시스템, 서비스 제공 접점 및 다른 단말류를 포함한다.

공중 전기통신 네트워크는 그 서비스를 사회 전체에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에 따라 체제를 만들고 확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또는 허가된 통일적 목표, 과정, 표준·절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전기통신 핵심 시스템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운용, 관리한다.

제 37조 공중 전기통신 네트워크는 매일 어떤 상황하에서도 계속 운용되어야 한다.

제 38 조 공중 전기통신 네트워크 운용은 환경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해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활동은 공중 전기통신 네트워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유해한 방해로 하여, 전송회선, 케이블, 안테나 및 다른 전기통신 설비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 2 절 전기통신서비스

제 39 조 전기통신서비스란 이용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공중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신호, 문자, 소리, 그림 등을 전송하거나 방송하며 수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전송, 축적,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 40 조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전화서비스
2. 전보서비스
3. 텔렉스서비스
4. 팩시밀리서비스
5. 데이터전송서비스
6. 전화통신채널가입서비스
7. 비디오, TV 서비스
8. 전자배달서비스
9. 멀티미디어서비스
10. 이동전화서비스
11. 무선호출서비스
12. 인터넷서비스
13. 부가가치통신서비스

제 41 조 단체 또는 개인은 전기통신서비스 규칙에 따라 각각의 주소에서 전기통신

가입 등록을 하고 또는 우체국, 서비스 시설에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는 휴일, 일요일도 포함하여 하루 종일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전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용자의 희망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이용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만 한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는 법률에 따라 정보의 내용물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입자의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42 조 DGPT의 기술적 순서 및 기준에 합치되면 전기통신의 설계, 설비의 설치 및 보수 운용은 가입자 자신, 계약한 회사 또는 개인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가입자 설비를 공중 전기통신 네트워크와 상호 접속하는 것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기업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제 43 조 전기통신 회선의 가입 및 임대는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1. DGPT 장관은 지역간, 국내 핵심통신 시스템에 종속된 국내, 국제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개통 및 폐지 결정을 한다. 그리고 상기에 서술한 시스템에 종속된 전기통신 회선의 가입 및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회선의 가입 및 특별 사례의 경우는 DGPT 장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다.

2. 정부의 계획, DGPT의 규칙에 근거하여, VNPT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통신 회선을 임대하기 위해 국가 전기통신 핵심시스템 체제를 정비하고 그것을 확장하여 운용, 관리한다.

3. DGPT의 규칙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전기통신 핵심 시스템의 회선사용이 허가된다.

특별이용목적의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정부기관 및 조직은 그들의 내부 통신용의 회선 가입이 허가된다.

제 44 조

1. 인터넷서비스 및 그것과 유사한 것은 베트남에 있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공중 전기통신 설비 및 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인 인터넷에 접속하고 그 네트워크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전기통신이다.

2. 국가는 베트남에서 인터넷 네트워크 및 서비스 관리와 통제를 일원적으로 행한다. 특히 국제 교환국을 명기하고 정보의 비밀대책을 규정하며 정보에 대한 접속 및 그 제공에 있어서 국가안전을 확보한다.

세계적 컴퓨터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자신의 컴퓨터를 접속하려는 단체 및 개인은 DGPT에 등록해야 되며 전달되고 받아들인 정보 내용에 책임을 갖는다.

3. DGPT는 베트남에서 인터넷 주소의 관리 및 국제 인터넷 조직으로 등록, 세계적 컴퓨터 네트워크인 인터넷과 접속되는 베트남 컴퓨터 네트워크에 주소를 할당하며 정부의 규칙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의 규칙을 정하며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를 하는 것 등에 책임을 갖는다.

제 45조 전기통신서비스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이 쓸 수 있도록 시간의 구분에 의해 몇 개의 서비스의 우선 순위로 나누어진다. DGPT 장관은 몇 개의 우선 순위를 규정한다.

제 46조 다음 형태의 정보는 긴급 서비스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

1. 폭풍우, 홍수, 화재 기타 자연재해로부터 예방 및 방어를 위한 것
2. 전염병에 대한 구조, 예방 및 방어를 위한 것
3. 국가의 방위, 안전에 관한 긴급 정보를 위한 것
4. 비행기나 선박이 위험 또는 사고를 만났을 때 구조 및 구제 정보를 위한 것
5. 다른 이익 추구가 아닌 긴급정보를 위한 것

상기 서술한 경우에 관한 긴급 업무에 이바지하기 위해 DGPT 장관은 공중용, 특별용도 포함시켜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설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한다.

제 47조 다음 사람들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선권을 가진다.

1. 당이나 국가의 지도자, 州인민위원회의 장, 또는 그것과 동등한 사람
2. 주의 책임자, 베트남에 온 외국인의 대표자, 외교관 대표, 국제 및 정부간 조직

의 대표자

제 48 조 전보, 텔렉스, 팩스, 기타 문서로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것은 문서 메시지라고 부른다.

각 당 및 국가, 군대, 외교적 자격이 있는 외국의 조직은 그 문서 메시지를 위해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허가된다. 다른 사람이 메시지 속에 코드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해당 국가기관의 허가를 얻어 등록해야 한다.

제 49 조 문서 메시지는 다음 장소로 보낸다.

1. 수취인의 주소
2. 우체국
3. 전기통신 가입자

DGPT는 다른 경우의 문서 메시지의 송부에 관해 규정한다.

제 50 조 송부되지 않은 문서 메시지에 대해서는 보낸 사람에 대해 통지를 한다. 또한 송달 시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6개월후 그 메시지들은 폐기된다.

제 3절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특별목적이용

제 51 조 특별목적용 전기통신 네트워크는 국가기관, 단체, 기업에 의해 각각 내부 연락용 전화 또는 비전화용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베트남 내에 있는 네트워크는 베트남의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의무성은 베트남의 해외외교기관간에 통신하기 위한 특별목적용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허가된다.

제 52 조 정부기관, 단체, 기업에서 특별목적용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명백한 사용목적에 갖고 있을 것
2. 네트워크 구성과 설계도, 운용방법, 네트워크와 설비의 기술수단, 기술기준 등을 가지고 있을 것. DGPT은 신청서의 수령 및 검토 그리고 면허의 발행에 대

해 규정한다. 특별목적용 전기통신 네트워크는 DGPT의 면허를 취득한 다음 운용이 허가된다.

제 53 조 특별목적용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구축이 허가된 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법률 및 면허의 조문에 따라 운용할 것
2. 그 네트워크를 공중용 서비스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중 전기통신 네트워크 및 다른 특별목적용 전기통신 네트워크에 대해 방해나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4. 다른 특별목적용 전기통신 네트워크와 직접 접속하지 않을 것

제 54 조 특별목적용 전기통신 네트워크와 공중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상호접속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쌍방 네트워크의 기술수단이 적합할 것
2. 상호접속, 통합 및 운용에 관한 규칙에 적합할 것

제 55 조 특별목적용 네트워크는 이 법률 및 다른 법률의 조문의 규제에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DGPT 및 국가의 해당 기관의 감찰 및 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 9 장 우편 · 전기통신회사

제 97 조 우편 · 전기통신회사는 다음 분야에서 법률의 규제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1. 우편 ·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
2. 우편 · 전기통신장치 및 물품을 제조할 것
3. 우편 · 전기통신물품, 장치의 수입, 수출 및 공급을 할 것
4. 우편 · 전기통신공사의 감독, 설계 · 공사를 할 것

상기 분야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 추가를 신청하려는 회사는 이 장의 규제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98조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국가가 소유하는 회사나 수상에 의한 법률의 규제 하에서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결정, 또는 인가된 100%의 자본을 국영회사가 가지는 지주회사이어야 한다.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공중우편·전기통신 네트워크의 기본 계획 및 기술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와 설비의 1개 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적 진보 및 운용 분야에 따라 기술 및 운용의 작업 팀을 가져야 한다.

제 99조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규제된 권리·의무 이외에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그들의 사업 및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위해 DGPT의 규제에 적합하게 국내 전기통신 핵심 시스템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2. 국가의 주파수 기본계획에 따라 무선주파수를 할당할 것
3.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BCC의 형태를 취해 외국인과 협력할 것
4. 법률의 규제에 따라 자본을 움직일 것, 기업에 의해서 발행된 채권은 주식으로 바꿀 자격이 없다.

우편·전기통신 지주회사는 국가가 소유하는 회사에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5.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구 과소지역, 산악지, 국경, 도서, 또는 다른 공적 활동을 위해 우편·전기통신서비스의 생산, 공급, 준비를 하고 있을 시에 정부의 가격보조, 지원, 규제 등의 제도를 이용할 것. 또한 정부와 동반하여 우편·전기통신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부로부터 같은 제도를 이용할 것.
6. 법률의 규제에 따라 시스템의 운용 효율을 보증하여 기술 및 이용상의 수단을 보증하고 안전성과 정보의 비밀을 보증할 것.
7. 자연재해의 예방 및 다른 공공 활동을 위해 당, 국가, 국가방위, 치안기관의 정보요구에 대해 우선권을 줄 책임이 있다.
8. 국가에 의해 규제되는 요금표를 제조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해 안내책자 및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9. 규제 실시에 관해 책임이 있으며 국가의 안전, 사회 질서, 정보의 비밀 및 우편·전기통신서비스의 영업 면허에 관해 국가의 통제하에 있을 것

10. 시내지역, 높은 인구밀도의 장소에서 우편·전기통신의 운용 및 큰 이익이 있으면 그것들이 과소지, 산악지, 국경 지대, 도서에서 우편·전기통신 시스템의 확충으로 이어지는 우편·전기통신서비스가 국가에 의해 규제될 것

제 100 조 베트남에서 우편·전기통신서비스의 확충을 하는 외국 기업의 대리점으로서 운용을 원하는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DGPT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DGPT는 우편·전기통신 사업에 관해 대리점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다.

제 101 조 VNPT는 우편·전기통신의 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업이다. 우편·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해 VNPT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우편·전기통신산업의 기본계획 및 확충계획, 국가의 규제에 따라 국가의 전기통신 핵심 시스템, 지역 내의 시스템, 기타 단말장치의 시스템을 개발, 관리, 사 용할 것.
2.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개발할 것.
3. 자연재해 예방, 그 밖의 공공 활동을 위한 국가, 당, 국방, 치안당국의 정보요구에 도움이 될 것; 과소지, 산악지역, 국경, 도서 등과 정보 연결을 위할 것.
4. 우편·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회사에 대해 제조면, 서비스 제공면 및 운용면에서 협력할 것.